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조사 휴가 규정 신설〉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63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경조사 휴가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1일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경조사 휴가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 대해 ①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②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③경조사 휴가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④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의2호 및 제39조제3항제8의2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6(경조사 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가(이하 “경조사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2. 자녀 입양 3.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해당

제37조(벌칙)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④ (생략)

하는 휴가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조사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⑤ 경조사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경조사 휴가의 신청을 받고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그가 부계 또는 모계혈족임을 이유로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한 경우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민법 제768조¹⁾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²⁾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

1)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2)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음.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³⁾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근로자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는바, 개정안은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경조 휴가에 대한 기업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여 헌법 제11조⁴⁾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근로자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3)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가·휴일제도와는 별개로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사 자율로 정하는 복지제도로 볼 수 있는바, 경조 휴가를 법에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조 휴가의 법제화 필요성과 이로 인한 사업주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현행 근로자의 휴가·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경조 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⁵⁾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18년 이후 ①주 52시간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으로 법정 근로시간 감소, ②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15일+α), ③1~2년차 연차휴가 확대(11일 증가) 등으로 휴일·휴가일수는 늘어난 상황이고,⁶⁾ 해외 주요국과 달리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경조사 휴가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휴일 적용 공휴일 규모는 우리나라(15일 이상)가 주요국(독일 9~13일, 프랑스 1일, 오스트리아 13일, 호주 7일, 일본 없음, 미국 없음)에 비해 많음

7) 대부분의 국가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음(멕시코, 브라질 등 소수국가만 유급)

문 의 처
02) 6788-5539